

각 위

회 사 명	J 트 러 스 트 주 식 회 사
대표자 직위·성명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종 목 번 호	8 5 0 8)
(상 장 거 래 소	오사카증권거래소 시장 제2부)
문 의 처	이 사 구 로 다 가 즈 노 리
전 화 번 호	0 3 - 4 3 3 0 - 9 1 0 0

스톡옵션(신주예약권) 부여에 관한 공시

당사는 오늘 개최한 이사회에서 회사법 제236조, 제238조 및 제239조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으로서 무상 발행하는 신주예약권의 모집사항 결정을 당사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의안을 아래와 같이 2013년 6월 27일 개최예정인 당사 제37회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예약권 인수자를 모집하는 이유

당사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 의욕과 사기 고조를 위해 당사 이사를 대상으로 신주예약권을 무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2. 이번 주주총회 결정 사항에 근거하여 모집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의 내용 및 수량 상한

(1) 해당 위임에 따라 모집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의 수량 상한

하기 (3)에서 정한 내용의 신주예약권 2,000 개를 상한으로 한다.

또한, 신주예약권을 행사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당사 보통주식 200,000 주를 상한으로 하며, 하기 (3)의 ①에 따라 부여 주식 수(이하에서 정의함)가 조정될 경우 조정 후 부여 주식 수에 상기의 신주예약권 상한을 곱한 수를 상한으로 한다.

(2) 해당 위임에 따라 모집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은 금전 납입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한다.

(3) 해당 위임에 따라 모집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 내용

① 신주예약권 대상 주식의 종류 및 수

신주예약권 대상 주식의 종류는 당사 보통주식으로 하고, 각 신주예약권의 대상 주식의 수(이하 ‘부여 주식 수’라 함)는 100 주로 한다.

단, 신주예약권을 할당하는 날(이하 ‘할당일’이라 함) 이후 당사가 당사 보통주식의 주식분할(당사 보통주식의 주식무상할당 포함, 이하 주식분할 기재 관련 동일) 또는 주식병합을 실시할 경우 부여 주식 수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text{조정 후 부여 주식 수} = \text{조정 전 부여 주식 수} \times \text{주식분할·주식병합 비율}$$

또한, 상기 외에 할당일 이후 부여 주식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여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끝수는 버림한다.

② 신주예약권 행사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치

각 신주예약권 행사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치는 각 신주예약권을 행사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는 주식 1 주당 납입금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함)에 부여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행사가액은 ‘ 할당일이 속한 달의 전월의 각일(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날은 제외)의 오사카증권거래소의 당사 보통주식 보통거래 종가(이하 ‘ 종가’ 라 함) 평균가에 1.05 를 곱한 금액(1 엔 미만 끝수는 올림) 또는 할당일 종가(당일 종가가 없는 경우 직전 거래일의 종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은 이하의 조정에 따른다.

가. 할당일 후 당사가 당사 보통주식의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을 실시할 경우 행사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고, 조정 결과 발생하는 1 엔 미만의 끝수는 올림한다.

$$\text{조정 후 행사가액} = \text{조정 전 행사가액} \times \frac{1}{\text{주식분할} \cdot \text{주식병합 비율}}$$

나. 할당일 후 당사가 당사 보통주식의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신주식 발행 또는 자기주식 처분을 실시할 경우(회사법 제 194 조 규정(단주를 보유한 주주의 단주매도청구)에 의거한 자기주식 매도, 당사 보통주식으로의 전환 증권 또는 전환가능 증권의 전환, 또는 당사 보통주식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회사채에 부여된 권리 포함) 행사의 다른 경우 제외)에는 행사가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고, 조정 결과 발생하는 1 엔 미만의 끝수는 올림한다.

$$\text{조정 후 행사가액} = \text{조정 전 행사가액}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 수} + \frac{\text{신규발행주식 수} \times 1 \text{ 주당 납입금액}}{\text{시가}}}{\text{기발행주식 수} + \text{신규발행주식 수}}$$

또한, 위 계산방식에 사용하는 ‘기발행주식 수’ 는 당사의 기발행 보통주식 총수에서 당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관련 자기주식 수를 공제한 수로 하고,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 신규발행주식 수’ 를 ‘ 처분하는 자기주식 수’ 로 대체한다.

다. 아울러 상기 이외에 할당일 이후 보통주주를 대상으로 한 타 종류 주식의 무상 할

당 또는 보통주주를 대상으로 한 타 회사주식의 배당을 실시할 경우 등 행사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는 관련 할당 또는 배당 등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신주예약권 할당일 다음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한 날부터 5 년 이내로 한다. 단, 행사기간 종료일이 회사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을 종료일로 한다.

④ 신주예약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증가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신주예약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증가하는 자본금은 회사계산규칙 제17조 제 1 항에 따라 산출되는 자본금 등 증가 한도액의 2 분의 1 의 금액으로 하며, 계산 결과 발생하는 1 엔 미만의 끝수는 올림한다.

나. 신주예약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증가하는 자본준비금은 상기 가에 기재한 자본금 등의 증가 한도액에서 상기 가에서 정한 증가 자본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에 의한 신주예약권 취득 제한

양도에 의한 신주예약권 취득은 당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⑥ 신주예약권 취득 조항

이하의 가 내지 다의 의안을 당사 주주총회가 승인한 경우(주주총회 결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이사회의 결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당사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날에 무상으로 신주예약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가. 당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 의안

나. 당사를 분할회사로 하는 분할계약 또는 분할계획 승인 의안

다. 당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주식이전계획 승인 의안

⑦ 조직재편에 따른 재편대상 회사의 신주예약권 교부 내용에 관한 결정 방침

당사가 합병(당사가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 한함), 흡수분할 또는 신설분할(각각 당사를 분할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주식교환이나 주식이전(각각 당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함)(이상을 총칭하여 이하 ‘조직 재편 행위’라 함)을 실시하는 경우 조직 재편 행위의 효력발생일(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합병효력발생일,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성립일, 흡수분할의 경우 흡수분할효력발생일, 신설분할의 경우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성립일,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효력발생일,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 성립일을 말함)의 직전에 존속하는 신주예약권(이하 ‘잔존 신주예약권’이라 함)을 보유한 신주예약권자에 대하여 각각의 경우에 회사법 제 236조 제 1 항 제 8 호의 가부터 마까지의 주식회사(이하 ‘재편 대상 회사’라 함)의 신주예약권을 각각 교부하기로 한다. 단, 이하 각호에 따라 재편 대상 회사의 신주예약권 교부 취지는 흡수합병계약, 신설합병계약, 흡수분할계약, 신설분할계약, 주식교환계약 또는 주식이전계획에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교부한 재편 대상 회사의 신주예약권 수

신주예약권자가 보유한 잔존신주예약권 수와 동일한 수를 각각 교부한다.

나. 신주예약권의 대상이 되는 재편 대상 회사의 주식 종류

재편 대상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한다.

다. 신주예약권의 대상이 되는 재편 대상 회사의 주식 수

조직 재편 행위의 조건 등을 고려한 후 상기 ①에 준하여 결정한다.

라. 신주예약권 행사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

교부된 각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때 출자되는 재산 가액은 상기 ②에서 정한 행사가액을 조직 재편 행위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재편납입금액에 상기 다에 따라

결정된 해당 신주예약권의 대상이 되는 재편 대상 회사의 주식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마.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상기 ③에 정한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개시일과 조직 재편 행위 효력 발생일 중 늦은 날부터 상기 ③에 정한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바. 신주예약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증가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상기 ④에 준하여 결정한다.

사. 양도에 의한 신주예약권 취득 제한

양도에 의한 신주예약권 취득은 재편 대상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아. 신주예약권 취득 조항

상기 ⑥에 준하여 결정한다.

자. 기타 신주예약권 행사 조건

하기 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⑧ 신주예약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1 주 미만의 끝수 처리

신주예약권을 행사한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주식 수에 1 주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버림한다.

⑨ 기타 신주예약권 행사 조건

신주예약권자가 신주예약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신주예약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상